

##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환경보전형 농업육성

손 은 남  
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

### I. 추진 개요

#### 1. 사업추진 필요성

- 과거 퇴비 등 유기질비료 중심의 농업에서 화학비료, 농약 중심의 농사로 바뀌면서 한강 물 오염이 가중됨
- 상수원보호구역에 환경보전형농업의 보급을 위하여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나 영세농가의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저리자금 지원이 필요
- 한강상류지역에 환경보전형 농업을 보급하면 서울시에서는 상수원 정수비용을 크게 절감 기대
- 한강상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WTO 체제 출범과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 제약으로 현지 농민의 불만 고조

#### 2. 사업추진 방향

- 환경보전형 농업 보급으로 한강상류지역의 환경보전
- 상수원보호구역 농민에게 장기저리의 생산자금 지원으로 우수농산물 생산 지원
- 서울시는 계약재배·자매결연·농산물판매장의 설치 등을 통하여 농협과 협조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지원
- 저리자금 지원에 따른 소요재원은 농협 상호금융자금으로 충당하고 이에 따른 금리 손실은 서울시에서 지방비를 확보하여 보전

#### 3. 소요재원 확보

##### 가. 자금소요액

- ('95년) 300억원, ('96년) 300억원, ('97년) 400억원, (누계) 1,000억원

나. 지원조건

농가당 4천만원, 연 5%, 2년거치 5년분할 상환

다. 금리손실보전을 위한 서울시의 지방비 확보

(단위: 억원)

'95년	'96년	'97년	'98년	'99년	2000년	2001년	2002년	2003년	누계
22.5	45	75	70.5	61.5	46.5	31.5	16.5	6	375

4.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

가. 팔당상수원지역에 환경보전형 농업 보급 확산

- 현지농민 2,500명에게 유기농업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에 유기농업의 조기정착
- 환경보전형 농업 분위기 확산으로 본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민들도 점차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되고 있음.

나. 팔당상수원 환경오염 방지

- 팔당호 인근에서 중소규모로 축산을 하는 농가가 축사를 유기농업식 톱밥발효축사로 개축함에 따라 축산오폐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,
- 팔당상수원 인근지역 농민에게 환경보전형 농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축산뿐 아니라 수도작 등 일반작목에도 유기농법을 적용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
- 생활하수에서 오는 상수원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인식 확산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.

다. 타지역의 상수원지역 환경보전형 농업육성 사업 파급 효과

-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농협이 환경보전형 농업육성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타지역에서도 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시하게 하는 사례가 되고 있음.
  - 환경보전형 농업 추진예정지역: 대전·충북지역, 광주·전남지역, 대구·경북지역 등
- 또한 본 사업을 실시하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도시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건강한 유기농산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국의 일반농민들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살아남기 위하여는 유기농업 등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우리나라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## II. '95 주요 추진현황 및 '96 추진계획

### 1. '95 주요 추진현황

#### 가.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보전형 농업 기초교육 실시

- 일시 : '94. 4. 7
- 장소 : 남양주시 교육관
- 참여인원 : 본 사업 참여 희망 농민 1,030명
- 교육내용
  - 유기·자연농업 기초 설명
  - 본 사업 참여신청자 접수

#### 나. 참여농가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실시

- 1) 교육대상인원
  - 대상농민 : 868명(유기농업 : 861, 자연농업 : 7)
  - 농협관계자 : 30명
  - 총참석인원 : 898명
- 2) 각 과정별 일정
  - 가) 유기농업
    - 교육인원 : 861명(기 수료자 34명 제외)
    - 교육기간 : '95. 4. 2~5. 11(총 7기, 각기별 3박 4일 출퇴근 교육)
  - 나) 자연농업
    - 교육인원 : 7명
    - 교육기간 : '95. 4. 24~4. 29(총 1기, 5박 6일 합숙훈련)
    - 장소 : 아산 도고온천 포시즌 콘도
- 3) 교육방법
  - 한국 유기·자연농업협회에 위탁 교육
- 4) 교육내용
  - 유기농업의 필요성
  - 토곡·속성 발효퇴비의 제조법 및 시용요령과 성과
  - 틈밭발효사료·균배양사료의 제조법 및 급여요령과 효과
  - 과수재배의 안전 다수확 재배법
  - 토양관리 및 유기질비료의 시비법 등

#### 다. 농협과 서울시와의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

- 일시 : '95. 5. 26
- 내용 : 목적, 대상지역, 용자 및 지원대상, 용자범위 및 방법, 대상작목, 기술지도 및 감독, 이차보전, 농업생산물의 품질보증, 농산물의 판매, 사후관리 등
- \* 서울시에서는 '95. 5. 6. 본 사업 관련 조례 제정 : 서울특별시 조례 제3187호

**라.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환경보전형 농업 홍보물 조제**

1) 목적

-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환경보전형 농업의 실시 배경 및 사업 안내
- 농약살포, 비료시비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 촉진
- 환경보전형 농업에 자신감 부여 및 우수농산물 생산운동 보급확산
- 지역주민의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마인드 제고

2) 내용 및 수량

- 리플렛 및 안내장(리플렛 : 1,200부, 안내장 : 3,000부)
  - 농약살포 및 잔류 허용기준 및 비료 표준시비량
  - 환경보전형 농업의 실천 기준
  - 환경보전형 농업 참여 농업인의 준수사항 및 제재 내용
  - 농사 상담 안내 등
- 입간판(950개)
  - 농가명, 작목명, 농지면적 및 작목수, 재배방법

3) 활용방안

- 농협창구에 비치 고객에게 배부
- 사업참여 농가에 배부 및 각 작목별 영농에 손쉽게 활용
- 참여 농장에 입간판을 설치하므로써 환경보전형 농업 실천의욕 고취

**마. 대출취급방침 수립 시달**

1) 목 적

본 방침은 서울특별시 조례 제3187호, “서울특별시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”에 의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을 위한 “상호 금융지역 농업발전 대출금”의 운용조건 및 원칙과 사업참여 농민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.

2) 연도별 자금지원 규모

(단위 : 억원)

연도별	'95년	'96년	'97년	계
금 액	300	300	400	1,000

3) 주요 내용

- 대출대상자: 대상농가, 대상작목, 지원방법
  - 자금지원조건: 농가당 지원액, 자금용도, 금리 및 대출기간
  - 대출취급절차: 용자신청서류, 용자방법
  - 사후관리 등
- 4) 시행일: '95. 5. 24

#### 바. 현지대책회의 개최

- 1) 목 적
  -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환경보전형 농업 실천의지 고취
  -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 추진협의회 구성
- 2) 일시: '95. 6. 29(목), 7. 6(목), 7. 8(토), 8. 18(금), 10. 12(목), 12. 7(목): 총 6회
- 3) 참석대상자: 조합장, 시군지부장, 참여 농민대표 등
- 4) 회의 내용
  - 본 사업관련 현지 대책회의
  - “환경보전형 농업 육성 추진협의회” 구성을 위한 협의

#### 사. 현지 농협 톱밥제조기 설치자금 지원

- 1) 목 적
 

환경농업을 위하여는 축사 깔집용과 톱밥퇴비용 톱밥수요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현지 농협 자체에 톱밥제조시설을 설치하여 값싸게 톱밥을 공급
- 2) 설치지역(4곳)
 

청설농협, 금사농협, 와부농협, 양평농협
- 3) 지원액: 400백만원

#### 아. 우수농산물 마크 제정 시행

- 1) 우수농산물 마크 제정 필요성
 

우수농산물(유기·자연농산물)은 생산과정에서 일반농산물 재배방법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초기에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되기 때문에 우수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될 수밖에 없음. 따라서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권위있는 기관의 품질보증 표시가 필요하게 됨.
- 2) 우수농산물 마크의 사용
  - 우수농산물 마크는 우수농산물 생산기준의 단계별 실천여부에 따라 제2단계인 경우에는 “건강농산물”, 제3단계의 경우에는 “유기농산물”로 구분하여 사용함.
  - 소포장의 경우에는 포장지 전면 중앙부에 부착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용기 조제시 부착위치를 조절하여 사용이 가능함.

- 대포장의 경우에는 생산자 표시란 좌측상단에 부착하든가 인쇄하여 사용함.
- 마크사용 허가기간은 해당작물의 1재배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지속적인 재배작물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사용기간을 허가할 수 있음
- 우수농산물 마크의 사용시에는 반드시 개별 소포장 또는 출하박스별로 검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마크가 부착되거나 인쇄된 포장용기 중 현지 농협의 검인이 되지 않은 농산물이 출하되지 않도록 지도
- 우수농산물 마크 사용 및 허가절차에 대하여는 세부추진계획을 별도 수립, 계통 농협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

**자. 전문기술요원 배치 운영**

1) 목 적

-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고정배치하여 유기·자연농업 전문기술지도 실시
- 본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 환경농업 참여에 대한 자신감 부여

2) 배치인원 : 19명(연차적으로 증가 계획)

3) 운영방침

- 본 상수원보호구역에 연중 상주하면서 유기·자연농업식 작물입식 지도
- 작물의 유기·자연농업식 병충해방제 기술 및 시비지도
- 퇴비제조방법 및 건강한 토양만들기 지도 등

**차. '96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 사업을 위한 기술교육 실시**

1) 교육과정

- 유기농업(2개 과목) : 축산, 과수, 원예, 수도작, 기타
- 자연농업(1개 과목) : 축산(양돈, 양계), 과수, 원예과정을 통합하여 실시
- 해당농민은 본 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신청
- 기존('95년)에 교육을 받은 농가도 희망농가는 금차에 교육신청하여 수료

2) 교육인원(843명)

- 유기농업 과정 : 744명
- 자연농업 과정 : 99명

3) 일정

- 기간 : 11-12월 중순까지 8차에 걸쳐 실시(과목별 2박 3일, 출퇴근 교육)
- 장소 : 현지 농협 회의실에서 실시

**파. 사업참여 조합장 및 시·군지부장 환경보전형 농업 선진지 견학 실시**

- 일시 : '95. 11. 27~11. 28(2일간)
- 대상지 : 경북(성주, 수륜농협, 경주아화농협)
- 참석인원

- 참여조합장 : 15명
- 해당지역 군지부장 : 6명
- 농협경기지역본부(종합사업부장 등) : 2명
- 본부 농촌지원부 환경농업과 : 1명

#### 하.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검정기 공급

- 대상조합 : 본사업 참여조합 18개 조합
- 토양검정기 공급 기종 : JY-3000(진구사)

## 2. '96 주요 추진계획

### 가. 잔류농약 허용치 준수 여부 검사

- 1) 목 적
  -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검사
  - 서울시와의 협약사항(제10조) 이행
- 2) 방 법
  - 사업대상지역에서 출하되는 농산물 품목별 또는 용자대상 100분의 5 이상을 추출하여 화학비료 과다 사용 및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
  - 검사는 현지농촌지도소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가피할 경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함.

### 나. 질산염 간이측정기의 공급

해당 조합장 1대(총 18대)

### 다. 자매결연 추진 및 소비자 현지 견학 실시

- 1) 목 적
  -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망 확보
  - 소비자들에게 유기·자연농산물에 대한 이해 촉진 계기 마련
- 2) 방 법
  - 사업참여 농협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대량 수요처가 있는 도시지역의 각종 소비자 단체와 연계
  - 동사무소 및 대기업체 등과 연계
- 3) 운 영
  - 각 소비자단체와 자매결연 추진
  - 소비자단체에게 유기·자연농산물 생산공장 견학을 추진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신뢰

성 확보 및 구매 유도

**라. 구청별 유기농산물 상설 판매장 설치 운영**

- 설치규모
  - 구청별 1개소(총 25개소), 개소당 100평 내외
  - 건물임차, 쇼케이스, 냉장보관시설 등 부대시설
- 건물임차: 개소당 5억원('96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)
- 부대시설: 농협에서 설치('96년 농협예산에 반영)

**마. 유기·자연농업기술 보급 비디오 제작**

- 1) 목 적
  -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환경보전형 농업 참여농가에 유기·자연농업 전문기술 보급
  - 환경보전형 농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자신감 부여
  - 환경보전형 농업의 보급 확산 계기 마련
- 2) 활용 방안
  - 본 사업참여 농가에 보급하여 유기·자연농업의 전문기술 습득
  - 환경보전형 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가에 보급
  - 해당 조합에 비치 및 농민교육시 활용

**바. 외국 농산물의 농약사용 실태와 유기·자연농산물 생산과정 비교 테이프 제작**

- 1) 목 적
  - 외국농산물의 농약사용 실태와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홍보
  -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 확산
  - 외국 농산물에 비해 유기·자연농산물의 우수성 홍보
- 2) 활용 방안
  - 서울시 구청별로 설치되는 유기·자연농산물 전시판매장에서 상시 방영
  - 각종 대량 소비자단체 및 업체에 보급과 교육자료로 활용

**Ⅲ.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지원 대책**

**1. 기본 방향**

- 서울시에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농산물 판매장을 구청별로 1개소 이상 설치(임대 또는 신축)
- 농협에서는 농산물 판매장을 인수하여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을



중심으로 판매장을 운영

-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서울 시민에게는 맑은 물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선 농산물을 제공
- 농산물 판매장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은 서울시와 별도 협의 추진

## 2. 판매대상 농산물

-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심으로
  -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계약재배를 통하여 구청별 판매장에 공급하는 농산물을 우선 판매하고
- 농협의 가공식품과 판매장 운영상 필요한 경우 기타의 유기농산물을 판매

## 3. 판매장 운영 기간

- 구청별로 설치한 농산물 판매장 운영기간은 본 사업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별도 계약에 의거 기한을 연장하여 운영
- 판매장 운영기간: '96년부터 2004년까지

## 4. 농산물 판매장 설치

### 가. 설치 원칙

- 초기의 농산물 판매장은 유기농산물 유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류단위가 될 수 있고 판매장의 체인화가 가능한 범위 내인 최소한 10개소 이상을 동시에 설치하고
-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생산하여 출하되는 농산물의 규모를 감안하여 하반기에 점차 확대 설치 운영

### 나. '96년도 농산물 출하예상량

(단위:톤)

	참여농민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계
'95년도 계약분	900명	354	861	960	784	2,962
'96년도 계약분	800명	—	800	900	700	2,400
합 계	1,700명	354	1,661	1,863	1,484	5,362

\* 출하예상물량은 사업참여 농업인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30개품목(축산물 제외)을 집계한 수치임.

### 다. 연도별 판매장 설치계획

(단위:개소)

연도별	'96년도			'97년	'98년	합 계
	상반기	하반기	소계			
판매장수	10	15	25	25	25	75

○ 판매장은 팔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출하물량을 감안하여 설치

### 5. 농산물 판매장 운영

#### 가.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를 통한 판매지원

- 사업지구에 대한 작목별 시기별 출하가능량 파악
  - 주체 :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
-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지농민과 계약재배 실시
  - 주체 :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
- 유기농산물 판매지원을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구청별 농산물 판매장에 공급
  - 설치주체 :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

#### 나. 농산물 판매장 운영

- 농산물 판매장은 총면적 100평을 기준으로 설치
- 매장면적 중 일부면적(20평 내외)을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 겸 휴게실을 설치하여 운영
- 판매전용공간은 초기에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과 농협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판매하고
  - 판매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기타의 신선한 유기농산물코너를 별도 설치 운영
- 장기적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과 농협 가공식품을 전문으로 판매
- 매장 판매와는 별도로 농협유통조직을 통한 고정고객을 확보하여 이를 회원화하여 가정 택배사업을 동시에 실시

### 6. 유기농산물 판매장 운영지도

#### 가. 유기농산물 판매장 근무요원에 대한 교육 실시

- 판매장 운영요원(판매장장, 판매담당자 등)에 대하여는 환경농업(유기·자연농업)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
- 유기농산물 판매장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유기농산물 판매장 운영기법을 별도 교육 실시

#### 나. 해당 구청과 연계한 농촌관련행사 공동개최

- 도시소비자 유기농산물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견학행사 실시
- 구청(동사무소)과 생산현지 작목반과 자매결연사업을 공동으로 추진
- 농산물 판매장에 부속된 회의실을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, 마을문고, 취미교실운영 등 각종 문화행사를 해당 구청과 공동 개최

#### 다. 도시 소비자 조직을 활용한 판매 지도

- 도시지역 부녀회,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등에 건강 및 환경강좌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조직에 대한 교육·홍보를 통한 유기농산물 판매지원
- 도시소비자 조직을 유기농산물 구매조직으로 활용, 정기회원으로 관리하여 지속적인 유기농산물의 구매 유도

## Ⅳ.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

### 1. 환경부(농림수산부)

#### 가.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규제사항 완화

##### 1) 농업관련 주요 규제내용

-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축사의 신축·개축이 전혀 허용되고 있지 않음.
- 특별대책지역 제1구역에서는 우사 450m<sup>2</sup>, 돈사 500m<sup>2</sup>까지만 발효축사의 신·개축이 허용됨.
-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: 가구당 200m<sup>2</sup> 이하만 설치를 허용함
- 온실: 가구당 3,000m<sup>2</sup> 이하의 양액재배 온실만 설치가 허용됨.
- 기자재 보관창고: 가구당 100m<sup>2</sup> 이하로 설치가 허용됨.

\* 관련법규: 수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

##### 2) 건의사항

-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축산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유기·자연농업식 톱밥발효축사인 경우는 300m<sup>2</sup>까지는 신축·개축을 허용
- 특별대책지역 제1구역에서는 유기·자연농업식 톱밥발효축사인 경우에는 1,000m<sup>2</sup>까지는 신축·개축을 허용
-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비가림 시설이 포함된 발효퇴비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660m<sup>2</sup>까지는 설치를 허용
-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양액재배 온실 외에도 유기·자연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은 1,000m<sup>2</sup>까지는 설치를 허용

### 2. 서울시

**가. 사업대상지역의 확대**

1) 추진상 문제점

-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보전형 농업 사업대상 지역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제1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음.
-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제2구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불만이 되고 있어 본 사업대상지역을 제2구역까지 확대하여 달라는 현지 농민의 요구가 있음.

현재의 사업대상지역	2구역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지역	총 사업대상지역
7개시·군 25개읍·면	1개군 18개 읍면	8개군 43개읍면

2) 건의사항

- 본 사업대상지역을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제2구역까지 확대 요망

**나.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존 농가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규모 확대**

1) 추진상 문제점

- 과거부터 유기·자연농업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에게 본 사업의 선도농가의 역할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는 8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음.
- 환경보전형 농업인 유기·자연농업은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농협에서 실시하는 유기·자연농업 기술교육만으로는 완전한 기술 습득이 어려워 기존에 유기·자연농업을 실시하고 있는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환경보전형 농업이 이루어져야 함.
- 그러나 운전자금 지원규모가 적어 기존농가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.

2) 건의사항

- 기존농가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규모를 2,000만원까지 확대 요망

**다. 환경보전형 농업에 필요한 톱밥제조기 구입비 지원**

1) 추진상 문제점

-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보전형 농업 실천을 위해서는 발효 퇴비나 톱밥이 다량으로 필요하나 톱밥가격이 비싸서 농가에서 구입에 어려움이 있음(톱밥구입비가 4.5톤 차량 1대당 25만원에서 27만원 소요)

2) 건의사항

- 서울시에서 톱밥제조기를 구입(셋트당 220백만원 소요)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해당 군별로 1-2개씩 현지농협 또는 작목반에 공급
-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수거된 가로수 전지목이나 폐가구를 톱밥제조장으로 전담 공급 요망

**라. 유기농산물 물류센터 및 구청별 판매장 조기설치 지원**

## 1) 추진상 문제점

- '95년 하반기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보전형 농업지원 사업에서 생산 및 출하되는 농산물이 서울시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내 유기농산물 물류센터 및 구청별 유기농산물 판매장의 설치가 지연되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.
- 또한 서울시에서 구청별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 또는 임대하여 농협에 인계하면 농협에서는 내부시설(개소당 2억원 소요)을 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서 추가로 필요한 저온수송차량 등 추가투자를 하기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.

## 2) 건의사항

- 서울시에서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유기농산물 물류센터를 통한 사업참여 농민과의 계약재매와 구청별로 설치키로 한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조기에 설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지원
- 유기농산물 판매장 운영에는 저온수송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바 서울시에서 저온수송차량 구입비를 추가 지원 요망

## 3. 경기도청

## 가. 농림수산통합지침사업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집중 지원

## 1) 추진상 문제점

-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보전형 농업육성 지원자금의 지원조건이 정부지원사업에 비하여 정부보조금이 없어 불리하고
- 생산된 유기농산물 출하를 위하여는 현지 포장시설·저온저장시설·저온수송차량 등이 필요하나 개별 농가에서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.

## 2) 건의사항

- 정부지원 현지포장센터·간이집하장·소규모저온저장시설·저온수송차량 등 농림수산 통합지침에 의거 지원되는 정부지원사업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집중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

## 나. 소규모 발효퇴비제조장 설치비 지원

## 1) 추진상 문제점

- 환경보전형 농업 실천을 위하여는 유기질 발효 퇴비가 다량으로 필요하나 시중에서 구입하려면 가격이 비싸서 구입에 어려움이 있음.
- 농가에서 발효퇴비장을 설치하려 해도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(개소당 1-2억원)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.

## 2) 건의사항

- 작목반 또는 마을단위로 소규모의 공동발효 퇴비장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을 경기도에서 지원 요망